

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1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 2. ○○세무서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4. 12. 10. 선고 2024구합52946 판결
변 론 종 결	2025. 4. 18.
판 결 선 고	2025. 5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○○세무서장이 2023. 1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4,812,170원의 부과처분,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이 2023. 2. 1.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및 가산세 합계



4,422,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,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.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"원고의"를 "원고를"로, "이 사건 각 부과처분"을 "이 사건 각 처분"으로 각 고쳐 쓰고, 제4면 제7행의 "이 법원"을 "제1심법원"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○○

판사 윤○○

판사 차○○